

-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기획전략과]

제안 설명서

설명자: 기획전략과장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에 근거한 행안부의 예수·예탁 활용 가능 검토 결과에 따라,
-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신속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대응하고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통합계정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4,000,000천원,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3,500,000천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고,
- 예탁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부담분으로 편성하고,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전 이행사항으로는

- 2025. 8. 2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변경하는 만큼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0092 5089
----------	--------------

제출년월일: 2025. 9. 3.

제 출 자:달서구청장
(기획전략과장)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에 근거한 행안부의 예수·예탁 활용 가능 검토 결과에 따라,
-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신속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대응하고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통합계정은 주차장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변경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고,
-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3.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4)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수·예탁 활용 가능 안내 공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059 (2025. 8. 14.))

나.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관계 법령 】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수·예탁 활용 가능 안내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자치단체 재정운용 관련,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예탁하여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자치단체 문의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3.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20.6.)되어 자치단체는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예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자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다른 법률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조문이고, 해당 조문 적용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배제하는 별도의 근거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도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 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여성민 서기관 강민철 재정정책과장 전결 2025. 8. 14. 김수경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4059 (2025. 8. 14.) 접수 예산담당관-9709 (2025. 8. 14.)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11 팩스번호 044-205-8717 / ysm156@mail.go.kr / 비공개

문서번호	기획전략과-8869
등록일자	2025. 8 . 22 .
결재일자	2025. 8 . 22 .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전략과장	기획경제국장
			전결
이지수	유상표	천지영	윤경득
협 조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수·예탁 활용 가능 안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059 (2025. 8. 14.))

□ 변경대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변경내용

- 통합계정 수입(예수금 7,500,000천원 증액), 지출(예탁금 7,500,000천원 증액)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input type="checkbox"/> 사전 검토항목			
성인지 관점 고려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친화도시 관점 고려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비 마련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금액 변동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I 큰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수·예탁 활용 가능 안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059 (2025. 8. 14.))

II 변경사유

- 통합계정
 -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일반회계로 예탁
 -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을 일반회계로 예탁

III 변경내용

- 통합계정
 - 수입계획: 예수금 7,500,000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4,000,000천원
 -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3,500,000천원

- 지출계획: 예탁금 7,500,000천원
- 상환계획: 향후 재정상황에 따라 분할 상환 예정

(단위: 천원)

구분	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입계획	722-01 예수금수입	11,539,320	4,039,320	7,500,000
지출계획	704-01 예탁금	11,500,000	4,000,000	7,500,000

IV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통합계정

○ 수입 변경계획안

(단위: 천원)

장 · 관 · 항 · 목	수입 계획			증감사유
	기정액	경정액	증감	
7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544,512	12,044,512	7,500,000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마련
720 내부거래	4,039,320	11,539,320	7,500,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4,039,320	11,539,320	7,500,000	
722-01 예수금수입	4,039,320	11,539,320	7,500,000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8,000,000,000- 기정4,000,000,000원= 4,000,000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3,500,000,000= 3,500,000				
수입 합계	4,559,669	12,059,669	7,500,000	

○ 지출 변경계획안

(단위: 천원)

조직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지출 계획			증감사유
	기정액	경정액	증감	
기획전략과	4,559,669	12,059,669	7,500,000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마련
일반행정	4,559,669	12,059,669	7,500,000	
재무활동(기획전략과)	4,559,669	12,059,669	7,500,000	
내부거래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000,000	11,500,000	7,500,000	
내부거래(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000,000	11,500,000	7,500,000	
704-01 예탁금	4,000,000	11,500,000	7,500,000	
○일반회계 예탁금 11,500,000,000원- 기정 4,000,000,000= 7,500,000				
지출 합계	4,559,669	12,059,669	7,500,000	

IV | **향후계획**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8. 25. ~ 8. 29.
- 의회 제출: 9. 1. ※ 제314회 임시회(9. 15.~9. 19.)
- 2025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확정: 9. 19.
- 제3회 추경 시 예산 반영

붙임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